

법안 B 전문  
Newport Beach 시

유권자에 의한 시장 직선제를 실시하기 위한  
Newport Beach 시 헌장의 개정과 관련된  
시의회 결의안 별첨 1

제1절: NEWPORT BEACH 시 헌장에 대한 개정 본문

Newport Beach 시 헌장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밑줄은 추가된 부분을 명시하며 취소선은 삭제에 의미):

제400절. 선출직 공직자.

시의 선출직 공직자들은 여섯 일곱명의 의원과 한 명의 시장으로 된 시의회를 구성한다. "시의회", "입법기관", 또는 이 헌장 또는 다른 법률 조항에서 사용되는 유사한 용어는 이 헌장의 다른 조항이나 법률의 다른 조항이 명시적으로 반대되거나 그러한 해석이 다른 조항의 의도와 맥락에 명백히 상반되지 않는 한 시장과 시의원들로 구성된 집합기구를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a) 시의회 후보자들은 본 헌장 제10조에 명시된 각 여섯 일곱 선거구의 선거인단으로부터 지명되어 본 헌장에 명시된 방식으로 시 전체 유권자들에 의해 각 선거구로부터 선출된다. 시의회 공직자 후보들간의 투표에서의 동수는 제비뽑기로 결정한다.

반갑아, 그리고 연속해서, 두 배-번의 사 년 임기는 (제2 및 제5 선거구) 넷으로 균등하게 나누어지는 각 짝수 해에 실시되는 한-번의 지방 총선거에서 총원되며, 네, 세 번의 사 년 임기(제1, 제3, 제4, 그리고 제6 선거구)는 본 개정안의 발효일에 존재하는 시의원들의 임기 순서와 일치하도록 하며, 넷으로 균등하게 나누어지지 않는 각 짝수 해에 실시되는 다음의 그러한 지방 총선거 에서 총원한다.

공직 기간은 사 년으로 한다. 각 시의원들의 임기는 당선 후 시의회가 시 서기관으로부터 선거 결과 인증서를 수령하는 시의회 회의일로부터 시작한다.

(b) 시장 후보자는 시의 선거인단으로부터 지명되어 본 헌장에서 명시된 방식으로 시 전체 유권자들에 의해 선출된다. 시장 후보들간의 투표에서의 동수는 제비뽑기로 결정한다.

시장직은 넷으로 균등하게 나누어지는 각 짝수 해에 실시하는 지방 총선거에서 총원한다.

공직 기간은 사 년으로 한다. 시장의 임기는 당선 후 시의회가 시 서기관으로부터 선거 결과 인증서를 수령하는 시의회 회의일로부터 시작한다.

제401절. 자격.

(a) 지명 또는 임명된 선거구역의 선거인이 아닌 한, 그리고 지명 또는 임명 직전 삼십 (30) 일 이상 등록된 선거인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선출 또는 임명 직전 삼십 (30) 일 이상 시의 등록된 선거인이 아니었다면, 그 어떤 사람도 시의원에 재직할 자격이 없다. 그 어떤 사람도 시장에 당선된 임기에 바로 이어지는 임기 동안 시의회 의원의 직무 자격이 없다.

제 400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람도 두 (2) 번 연속 사 (4) 년 임기 이상을 시의회 의원으로 재임할 수도 또 자격도 없다. 현임기 이전에 일회 이상 임기를 마친 시의원은 이러한 임기를 마칠 수 있으나, 아래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선될 수 없다. 이 개정안의 시행일 현재, 초임 중인 시의회 의원은 현 임기 만료 시 두 번째 사 년 임기에 재선될 자격이 있다.

이 절은 1992년 11월 유권자들에 의해 제정된 시의회 의원에 대한 연임 제한을 변경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두 (2) 번 이상의 연임을 금지하거나, 해당인의 선출로 인해 두 번 이상의 연임을 하지 않는 사람을 부적격자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b) 그 어떤 사람도 현재 등록된 선거인이 아니거나, 지명 또는 임명 직전 삼십 (30) 일 이상 해당 시의 등록된 선거인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선출 또는 임명 직전 삼십 (30) 일 이상 시의 등록된 선거인이 아니었다면, 시장직에 재직할 자격이 없다.

제 400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람도 시장직에 두 (2) 번 연속으로 사 (4) 년 임기 이상을 재직할 수 없다.

이 절은 시장직에 두 (2) 번 이상 재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할 수 있는 사람을 부적격자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제403절. 공석.

어떠한 이유에서든 시의회에 공석이 발생할 시, 그 공석이 발생한 선거구 출신의 책임자를 시의회가 임명하여 총원하고, 임명된 사람은 다음 지방 총선거 이후 첫 번째 화요일까지 그리고 그 후임자가 자격을 얻을 때까지 재직하게 된다. 모든 공석은 다음 지방 총선거 때까지 공석이 있는 선거구에서 의원을 선출하여 만료되지 않은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 재임하게 한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시장직에 공석이 발생할 시, 시장직의 공석은 그 공석이 발생한 날로부터 88일 이상 103일 이하에 실시하는 특별 선거를 통해 만료되지 않은 잔여 임기동안 재임하되, 시의 지방 총선거와 통합하기 위해 공석인 유효일자로부터 180일 이내에 특별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특별 선거 실시 일정 내에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선거를 명할 수 없으며, 시장직은 공석으로 남게 된다.

시의회 또는 시장이 마지막으로 시의회 정례 회의 참석 이후 육십 일 동안 연속적으로 시의회에의 모든 정례 회의에 불참할 경우, 시의회가 공식 회의록상에 허가를 명시했거나, 해당 의원이 도덕적인 부패와 관련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해당 선거구의 선거인 자격이 중단되지 않는 한, 해당 자리는 공석이 되고 시의회가 이를 선포한다.

시의회가 공석을 선언한 후 삼십 일 이내에 임명에 의한 공석을 채우지 못할 경우, 즉시 선거를 실시하여 해당 선거구의 공석을 채우도록 하여야 한다.

제404절. 시장. 시장 직무대행.

시의회는 시의원을 선출하는 지방 총선거 또는 특별 선거의 결과에 대한 인증서를 받은 회의일자, 시의회는 새로 선출된 의원에게 선서와 자격을 부여한 후, 그 의원 중 한 명을 시장직을 갖게 될 의장으로 선출한다.

(a) 시장은 회의의 의장이며 시의회 의결위원이 되며, 모든 절차에서 발언권과 투표권을 가진다.

(b) 시장은 제405절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시의회 안건 수립 및 안건 순서 변경 등의 전결권을 가진다.

(c) 시장은 정책, 프로그램 및 시 정부의 필요를 시민에게 해석할 전적은 아니나 주된 책임을 가지며, 시장은 필요할 경우 정책 또는 프로그램의 변경 사항을 시민에게 알릴 수 있다.

(d) 시장은 행사 목적의 공식 대표이며, 본 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시의회가 부여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직에 맞는 기타 업무를 수행한다. 시장은 시의회에의 뜻에 따라 이러한 직무를 수행한다.

(e) 시의회는 시장이 선출됨과 동시에 의원 중 한 명을 시의회 의사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할 시장 직무대행을 지명한다. 시장 직무대행은 시장이 부재중이거나 업무를 할 수 없을 때 시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405절. 시의회에 부여된 권한.

시의 모든 권한은 본 헌장에 기재되어있지 않는 한 시의회에 귀속된다. 어느 공청회에서나 시의회 의원 최소 세 명 이상의 찬성으로 향후 시의회 안건을 추가할 수 있다.

제410절. 정족수. 절차.

시의회 의원의 과반수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족수를 구성하되 이보다 적은 수라면 때때로 휴회할 수 있다. 정족수의 목적으로, 시장이 시의회 의원으로 간주된다. 시의회 의원 전원이 정례 회의에 불참하거나 정회를 선언한 때에는 시 서기관이 정해진 요일과 시간으로 정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정족수 미만의 인원으로 또는 서기관에 의해 연기된 회의의 통지는 서기관이 통지하거나 시의회 임시 회의 통지에 대해 본 헌장에서 정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동의에 의하여 보류할 수 있으나, 조치할 사항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 시의회는 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원의 자격을 심사한다. 의회는 모든 선거 결과를 판단한다. 의회는 절차의 실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어느 회의에서든 의원 또는 그 밖의 사람을 무질서한 행위로 제명 또는 기소할 수 있다.

시의회 의원 및 시장은 시의회에 계류 중인 조사 또는 절차에 대해 선서 및 학답을 행할 권한을 가진다. 시의회는 의회의 명의로 증인의 출석을 강요하고, 선서를 한 후 검사하며, 결과 과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소환장은 시의 명의로 발부하며 시 서기관이 이를 증명한다. 이러한 소환장에 불복종하거나 (헌법적 근거가 아닌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경범죄에 해당하며, 본 헌장의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처벌할 수 있다.

시 서기관은 의원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출석부의 인원을 소집하여 요구의 대상이 되는 안건에 대한 찬반 결과를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04절. 지명 청원서 서명 유권자.

시의원직 추천을 위한 청원서에 서명하는 유권자는 지명 대상 선거구의 주민이며 등록 유권자여야 한다.  
시장직 추천을 위한 청원서에 서명하는 유권자는 해당 시의 시민이며 등록 유권자여야 한다.

## 제1005절. 선거구.

여기서 '시'는 여섯 개 일곱 개 선거구로 나뉘며, 명칭 및 각각의 경계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의원 정례 선거 육 개월 이내에 선거구의 경계를 변경 및 재정립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시의회는 전국 인구조사 이후 십 년마다 위원회를 임명하여 시의 선거구 조정에 관한 자문을 연구하고 시의회에 보고하게 한다. 해당 위원회의 보고를 받은 경우, 그 외에도 선거구의 경계가 공정하고 논리적으로 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의회는 조례로 여기에 설정된 여섯 개 일곱 개 선거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고 재정립할 수 있다. 선거구들의 경계는 해당 구역이 가능한 한 인접하고, 자연스럽게 밀집된 지역으로 구성되며 시의회에서 공정한 대표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제401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구획으로 의원이 지명 또는 임명된 선거구에서 당선된 경우, 또는 임명된 경우, 다음 총선거까지 의원의 직무를 박탈할 수 없다. 이후 시에 합병되거나 통합된 모든 영토는 시의회의 조례에 의해 인접 선거구 또는 선거구들에 추가되어야 한다.

## 제2절: 투표지 설명

정부법 제34458.5절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제안된 현장 개정안에는 다음의 투표지 설명을 포함한다:

### 현장 개정안

**시장 직선제** - 제안된 현장 개정안은 Newport Beach 시 현장 제400, 401, 1004, 그리고 1005절을 개정하여 시의회의 구성을 일곱 명의 시의원에서 한 명의 시장과 여섯 명의 시의원으로 변경한다. 시장은 Newport Beach 시 ("시")의 주민들과 등록유권자들에 의해 지명되고 시 전체 유권자들에 의해 선출될 것이다. 시의회 선거구의 수는 여섯 개로 축소되며, 시의원들은 여섯 개의 선거구에서 시 전체 유권자들에 의해 각각 선출될 것이다. 시장으로 선출된 사람은 사 년의 임기가 있고, 평생 두 번의 사 년 임기의 시장직 자격이 있다. 또한, 시장은 그 사람이 시장으로 선출된 임기에 바로 이어지는 임기동안 시의원직을 재임할 수 없다. 본 법안은 또한 시장직의 공석을 채우는 절차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 제403절을 개정할 것이다.

현장 제404, 405 및 410절은 시장에게 다음을 제공하도록 개정될 것이다: 회의의 진행을 위한 정족수 설정을 목적으로 시의원으로 간주되며; 모든 시의회 회의를 주재하고, 시의회의 투표위원이 되며, 업무 순서를 결정할 재량권 및 모든 시의회 절차에 대한 발언권을 가지며; 시의회 회의의 안건을 정한다; 하지만 모든 시의회 회의에서 세 명의 시의원이 미래의 안건에 항목을 추가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질 수 있다. 이 현장의 개정은 시의회에 유권자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급여에 대한 또는 그 외 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올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 제3절: 분리성

본 현장 개정 법안의 조항은 분리될 수 있으며 이 현장 개정 법안의 조항, 또는 개인 및 상황에 대한 그것의 적용이 무효화된 경우, 이러한 무효성은 무효 조항 또는 적용 없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 현장 개정 법안의 다른 조항 또는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 제4절: 대립되는 법안

이 현장 개정 법안과 선출된 시장, 시의회 선거구 및 시장의 임기 제한과 관련된 다른 법안 또는 법안들이 동 지방선거 투표지에 나타나야 되는 경우, 다른 법안 또는 법안들은 본 현장 개정 법안과 대립이 된다고 간주되어야 한다. 본 현장 개정 법안이 과반수의 가결 표를 받은 경우, 본 법안의 조항은 전체 인정되며 다른 법안 또는 법안들은 무효로 처리된다.

본 현장 개정 법안이 유권자의 승인을 받았으나 같은 선거에서 유권자의 승인을 받은 다른 대립되는 법안과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대체되는 경우, 그리고 이러한 다른 대립되는 법안이 이후에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본 법안이 자체 발효되며 완전한 효력을 발휘한다.

### 제5절: 이행

본 현장 개정 법안이 승인된 경우:

- 본 현장 조항의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시의회 의원은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자가 선출되어 자격이 부여될 때까지 해당 직을 유지한다.
- 시의회는, 본 현장 개정안이 발효되는 연도 이후 치러지는 다음 총선거 육 (6) 개월 전까지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따르고, 여섯 (6) 개 시의회 선거구 각각의 경계를 설정하기 위한 조례를 채택해야 한다.
- 본 법안의 제정은 유권자의 찬성으로 시의원 재직자에게 적용되는 연임 제한을 재설정하거나 연장하기 위하여 해석하거나 적용할 수 없다.

### 제6절: 유효 일자

본 현장 개정 법안은 법에 따라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